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10.

담양군의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영방침을 권장하고, 이에 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방향,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음.

나. 실태조사(안 제6조)

-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이에스지(ESG)위원회를 둘 수 있음.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0. ~ 11. 17.(7일간)

5. 의견제출

-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담양군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요소인 환경(Environme 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담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담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담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 발전을 위한 시책의 평가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회,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이에스지(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업무를 담당하는 담양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